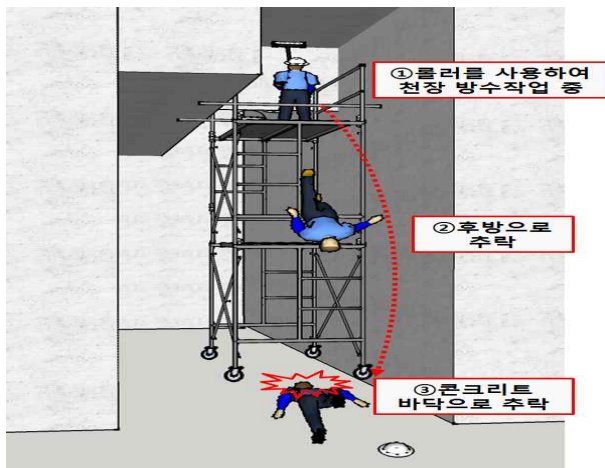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18. 7. 31(화) 경기도 시흥시 소재 수질복원센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사 협력업체 (주)△△건설 소속 작업자가 지하2층에 설치된 이동식비계 2단 작업발판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3.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미준수
 - 이동식비계 2단 작업발판 단부에 60cm 높이의 중간난간대만 설치하고, 상부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미준수



재해 예방 대책

- 이동식비계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준수
 - 떨어짐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는 작업발판으로부터 90cm 이상, 120cm 이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,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의 중간 위치에 설치하여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준수
-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
 - 떨어짐 위험이 있는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시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